

인천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3가합12552(본소), 2015가합3729(반소) 판결

[구상금 · 부당이득금청구등]

전 문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

피고C

변론 종결 2015. 9. 16.

판결 선고 2015. 10.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154,844,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2013.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나. 피고 C는 150,608,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B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피고 C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각 154,844,772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238,851,158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285,423,822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동업약정

원고와 D는 2004. 4.경 파주시 E1) 에 위치한 F지구 내 상업용지 1380m²(약 418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 분양한 다음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D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1) G, H, I, J(이하 위 4명을 통틀어 지칭할 때 'G 외 3명'이라 한다)은 2004. 6. 24. 한국토지공사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326,800,000원으로 하되, 매매대금의 10%인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일에, 그 후 6개월마다 중도금을 납부하여 2007. 6. 24. 6차 중도금 799,0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잔금지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2) D와 K은 위 G 외 3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이하 '분양권'이라고만 한다)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04. 11. 12.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면적(690m²)에 관한 분양권을 평당 20,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1,776,000,000원[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에다가 분양권 이전의 대가인 소위 '프리미엄'(이하 이를 '프리미엄'이라고만 한다)을 더한 가격]에 재차 매수하였다.

3) 위와 같은 분양권 매수약정에 따라 원고와 D는 2004. 12.경부터 2005. 7. 7.경까지 위 G 외 3명 및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 외 3명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원고와 D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면적(690m²)에 관하여 승계하는 내용의 각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동업약정 및 피고들의 투자

1) 원고는 2005. 1.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에 관한 지분 50% 중 각 1/4(이 사건 사업 전체지분 중 각 12.5%)을 평당 2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들에게 양도하되, 향후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피고 C는 원고의 한국씨티은행(구 한미은행) 계좌로 2005. 1. 11.경 70,000,000원, 2005. 1. 25.경 30,000,000원을 비롯하여 합계 647,300,000원을, 피고 B는 2005. 1. 11.경 300,000,000원, 2005. 2. 15.경 143,700,000원, 2005. 3. 31.경 240,000,000원 합계 683,7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3) 한편, D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에 관한 지분 50% 중 1/2(이 사건 사업 전체지분 중 25%)을 평당 2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M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M으로부터 투자받았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분양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정산

1) 원고와 D는 2005. 5. 17. 'N'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여 2006. 5. 10.경 준공을 완료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이 분양됨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D는 2006. 8.경부터 수차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과 비용을 결산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여 주었는데, 최후에 작성된 것은 2007.

10. 16.자 결산서(갑 제9호증의 2 참조, 이하 '이 사건 결산서'라고 한다)로서 그 예상수익이 7,507,037,629원이다.

3) 원고는 피고 B에게 수익에 대한 정산금으로 2006. 9. 12.부터 2007. 1. 31.까지 총 7회에 걸쳐 1,008,7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에게는 2006. 7. 28. 124,200,000원을 비롯하여 2007. 1. 15.까지 8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와 D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정산이 마무리 되자 2007. 12. 31. 위 N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의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2005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고의 소득금액이 1,801,000,000원 과소신고되었음을 발견하였고, 남인천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그중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2010. 10. 5. 원고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1,676,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원고는 남인천세무서장의 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하여 2010. 12. 30.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 50% 중 1/2인 25%를 피고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양도한 지분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1. 20.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3) 원고는 2010. 11. 1. 100,000,000원을 비롯하여 2012. 1. 13.까지 총 619,379,090원의 경정·고지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에 관한 원고의 지분 50% 중 1/2인 25%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 매입가격인 평당 20,000,000원에다가 원고 몸의 프리미엄을 더한 평당 24,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피고들에게 각 1/2씩(12.5%) 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1,331,000,000원(= 647,300,000원 + 683,7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사업 중 원고의 지분 50%에 관한 종합소득세 619,379,090원을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인 12.5%에 따라 배분한 154,844,772원(= 619,379,090원 × 12.5%/50%)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익금 정산 전에 공제되었어야 할 제반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금원임에도, 원고는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대한 종합소득세까지 추가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및 반소청구원인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지분비율은 원고와 피고들이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에 투자한 투자금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매수하였다고 말하며 이를 기준으로 피고들로부터 합계 1,331,000,000원을 투자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와 D가 실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데 든 비용은 8,340,000,000원(= 417평 × 평당 20,000,000원)이고, 그중 4,794,120,000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에서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투자한 금액은 총 3,545,880,000원(= 8,340,000,000원 - 4,794,120,000원)이다. 그중 원고와 피고들의 투자금액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비율에 따른 1,772,940,000원(= 3,545,880,000원 × 1/2)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한 금액의 총합은 1,331,000,000원이므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투자한 비용은 441,940,000원(= 1,772,940,000원 - 1,331,000,000원)에 불과하다.

다) 이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지분비율을 조정하면 원고 441,940,000원 : 피고 B 683,700,000원 : 피고 C 647,300,000원 = 24.927% : 38.563% : 36.510%이다. 조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7,507,037,629원(이 사건 결산서 기준)을 정산하여 보면 피고 B은 1,447,469,460원($= 7,507,037,629원 \times 1/2 \times 38.563\%$)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1,008,7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차액인 438,769,460원을 피고 B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 원고가 추가적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619,379,090원 중 조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피고 B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238,851,158원($= 619,379,090원 \times 38.563\%$)인데, 이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B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익금 438,769,460원과 피고 B이 원고에 대해 지급해야 할 종합소득세 구상금 238,851,158원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 238,851,158원³⁾을 얻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 B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 반소청구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마) 설령 원고 및 피고들 사이의 지분비율을 1:1로 본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스스로 부담하였어야 할 출자액이 886,470,000원[위 나)에서 살펴 본 원고와 피고들의 투자금액 1,772,940,000원 $\times$ 원고의 지분비율 1/2]임에도 441,940,000원[위 나)에서 살펴 본 원고와 피고들의 투자금액 1,772,940,000원 - 피고들의 실제 투자금액 1,331,000,000원]만을 투자한바, 그 차액인 444,530,000원 상당의 출자의무를 불이행하여 결과적으로 그 금액만큼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 전부에게 그 수익이 배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중 피고 B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57,082,097원($= 444,530,000원 \times 12.841\%$ ⁴⁾)을 추가로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초과 투자받은 444,530,000원(= 피고들의 실제 투자금액 1,331,000,000원 - 피고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출자액 886,470,000원)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위반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중 피고 B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228,341,725원[$= 444,530,000원 \times (683,700,000원/1,331,000,000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를 합한 285,423,822원($= 57,082,097원 + 228,341,72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인 2008.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예비적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

2) 피고 C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지분비율은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에 대하여 투자한 투자금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매수하였다고 말하며 이를 기준으로 피고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원고의 지분비율을 25%로, 피고들의 지분비율을 합계 25%로 각 정하였다.

나) 그러나 실제 원고와 D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매수한바, 원고는 평당 4,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들로부터 초과하여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에 해당하는 금원만큼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금원을 투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지분비율은 실제 투자한 금액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추가적으로 정산이 필요한 금원 및 원고가 추가적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피고들이 부담할 금원이 결정되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지분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지분비율 확정

1)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 시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1, 4호증, 제8호증의 2,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할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고의 지분비율을 25%, 피고들의 지분비율을 합계 25%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실제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지분비율은 25%, 피고 B의 지분비율은 12.842% [= 25% × (683,700,000원/1,331,000,000원)],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반올림, 이하 같음], 피고 C의 지분비율은 12.158% [= 25% × (647,300,000원/1,331,000,000원)]가 된다.

①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에 관한 원고의 지분 50% 중 1/2인 25%를 피고들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들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에 관한 지분의 평가 기준에 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들의 지분을 합계 25%로 정하여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들의 각 답변서 참조).

② 원고와 피고 C가 2005. 1. 10.자로 작성한 사업약정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 중 1/2을 인수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지분이 25%, 피고들의 사업지분이 합계 25%(피고 각자의 지분 12.5%)가 됨을 정하고 있고, 피고 C가 2011. 1. 12.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 역시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 중 1/2을 인수하였고, 그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사업약정서는 2005. 1. 10.경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피고 B은 위 사업약정서 작성에 관여조차 하지 않았으며, 위 사실확인서 역시 피고 C가 단독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를 피하기 위한 원고의 부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사업약정서와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 C로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신의 지분이 인정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종합소득세를 추가적으로 징수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위 사업약정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지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위 사업약정서와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은 위 사업약정서와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15.자로 수익금 정산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발송해 주기도 하였는데, 위 정산표에는 피고들의 지분비율의 합계를 25%로 하여 위 25%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실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피고들의 지분을 조정한 후 그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수익금 정산표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수익금 정산표에 따른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은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에 대하여 투자한 투자금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에 관한 지분을 평당 2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매수하였음에도, 피고들에게는 평당 2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바, 원고는 평당 4,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들로부터 초과하여 지급받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원만큼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금원을 투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지분비율은 실제 투자한 금액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와 D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데 투자한 비용은 3,545,880,000원(= 8,340,000,000원 - 4,794,120,000원)이고, 그중 원고와 피고들이 부담한 비용은 1,772,940,000원(= 3,545,880,000원 × 1/2)이며, 피고들의 투자금액은 합계 1,331,000,000원이므로, 원고의 실제 투자금액은 441,940,000원에 불과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및 수익금 정산 당시에는 원고의 지분비율을 25%로, 피고들의 지분비율을 합계 25%로 정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는 달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실제 투자한 투자금에 비례하여 지분비율을 정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격은 25%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지분에 대한 가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원고가 취득한 가격에 비해 과다하게 평가된 금원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양도대상 혹은 투자대상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가액산정의 기초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는 것으로서 그 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액산정의 기초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양도대상 혹은 투자대상인 지분비율이 재조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점, ③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격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데 든 실제 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최초

한국토지공사와의 매매가격에다가 분양권의 전매에 따른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으로서 이를 가정적으로 계산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최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K이나 D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서로 다르고, K과 D는 자신들이 분양권을 취득한 비용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하여 평당 20,000,000원의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원고, M에게 각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대부분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D, M 등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들 사이에서도 실제 이 사건 사업에 현실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그에 따라 지분비율이 정해진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⑥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당시 원고의 실제 투자금을 확인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에 관한 지분 25%를 피고들에게 양도하면서 그 가격을 평당 20,000,000원이 아닌 평당 2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을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에 대하여 투자한 투자금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고의 실제 투자금액이 441,940,000원이고 피고들의 투자금액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을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원인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이 1,801,000,000원 과소신고되었으므로, 남인천세무서장이 그중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2010. 10. 5. 원고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1,676,6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라 2010. 11. 1. 100,000,000원을 비롯하여 2012. 1. 13.까지 총 619,379,090원의 경정·고지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와 D가 이 사건 사업의 지출금액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지분권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지분비율에 따라 이를 부담할 성질의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에 나타난 종합소득세 추가 부과경위를 검토하여 보더라도, 피고 B 주장과 같이 원고의

당시 업무처리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총 619,379,090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59,081,325원(= 619,379,090원 × 12.842%/50%, 원 이하 버림, 이하 같음), 피고 C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50,608,219원(= 619,379,090원 × 12.158%/50%)을 각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4,844,7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2012. 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8. 28.까지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150,608,2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2012. 1. 13.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0. 14.까지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들의 주장 및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지분비율 재조정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 및 피고 B의 주위적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할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고의 지분비율을 25%, 피고들의 지분비율을 총합 25%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실제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와는 달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을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에 대하여 투자한 투자금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실제 투자금액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을 재조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및 종합소득세 추가납부 금액을 새롭게 정산하여야 한다는 하는 피고들의 주장 및 피고 B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B의 예비적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격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데 든 실제 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최초 한국토지공사와의 매매가격에다가 분양권의 전매에 따른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으로서 이를 가정적으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대부분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 D, M 등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들 사이에서도 실제 이 사건 사업에 현실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그에 따라 지분비율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4. 11. 12.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을 매입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50% 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들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에 관한 지분합계 25%의 지분을 적법하게 양수한 이상 원고가 추가적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출자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위반하여 피고들로부터 초과 투자받은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에 관한 지분 50% 중 25%를 평당 24,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평당 20,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매수하였음에도 이를 피고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평당 24,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상 어떠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동업계약 상 피고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출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B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권희

판사홍윤하

판사정순열

- 1)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현재는 그 지번이 파주시 L이다.
- 2)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합병되어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 3) 이는 199,918,302원(= 438,769,460원 - 238,851,158원)의 명백한 오기(誤記) 내지 오산(誤算)으로 보이나, 반소청구취지 금원으로서 이를 그대로 둔다.
- 4) = 25% × (683,700,000원/1,331,000,000원)